

# 농식품 R&D 과제관리 사례

-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성 제고 중심 -

2019. 6. 20.



# 목차

**IPET**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


1. 농식품 R&D 추진체계
2. 성과 중심 과제관리
3.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
4. 연구성과 확산
5.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



# 1 농식품 R&D 추진체계

## 설립목적 ▶▶

-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**연구개발사업의 기획/관리 및 평가**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
- 설립근거 :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

## 주요기능 ▶▶

- 농림축산식품 R&D에 대한 **종합계획 및 정책개발 수립** 지원
  -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
  - R&D 정책방향 수립/조정(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운영) 지원
  - 기술정보 수집/분석 및 미래기술 예측, 기술영향 및 수준 평가 등 수행
-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**R&D 사업의 기획/평가/관리**
  - 연구개발사업의 기획/평가/관리 수행
  - 연구개발사업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 촉진
- 농림식품분야 **기술인증제도 운영**
  - 농림식품분야 녹색인증 및 신기술인증 제도 운영
  - 농림식품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운영

## 국가R&D 법령 체계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   | 과학기술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통령령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공동관리규정) |
| 부령  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|
| 행정규칙 | 연구노트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용 계상기준        |
|      |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       |
|      |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|
|      |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                  |

## 농식품 R&D 법령 체계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   |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     |
| 대통령령 |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 |
| 부령   |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|
| 훈령   |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|
| 예규   |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|

## 연구개발 규정 체계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과학기술<br>행정법령 | 과학기술기본법(법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          |
| 정부부처<br>운영규칙 |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<br>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|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국가과학기술심의회)

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(농식품부, 양청)

농림축산식품부

농촌진흥청

NTIS 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

관리  
프로  
그램

FRIS  
(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)

ATIS  
(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)

LATIS  
(지방)

관리체계

수요조사 기획

어젠다

지정공모

자유응모

고유연구

공동연구

R&D  
사업비

출연금

시험연구비, 시설비, 장비비

출연자보조금

연구주체
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IPET)

기업

농업법인  
등 기타

대학·출연연

농과원, 식량원,  
원예원, 축산원

도농업기술원

대학, 출연연, 산업체

연구회, 농업인

실용화,  
산업화

자체실시

자체실시  
및 기술이전

농업기술실용화재단



## 2 성과 중심 과제관리



## 성과지표 및 세부항목

| 성과지표명   | 세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과지표명 | 세부항목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지식재산권   | 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품, 규격<br>표준, 프로그램       | 기술인증  | 기술·제품 인증 등         |
| 논문/학술발표 | 국내외 논문(SCI, BISI)<br>국내외 학술발표, 논문평균 IF | 인력양성  | 연구인력 활용/양성         |
| 기술실시    | 기술실시, 기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책활용  | 정책건의, 정책반영 등       |
| 교육지도    | 교육지도(현장컨설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보/전시 | 신문, 방송, 저널, 전시회 등  |
| 사업화     | 제품화, 매출발생, 고용창출(별도관리) 등                | 기타    | 국제화협력, 타 연구개발 활용 등 |

## 목표/실적 관리 예시

| 성과목표    | 사업화지표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| 연구기반지표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  | 지식<br>재산권 |       |        | 기술<br>실시(이전) |     | 사업화 |     |     |      |      | 기술인용 | 학술성과   |      |           | 정책·홍보<br>활동 | 인재양성 | 정책·홍보<br>활동 |      | 기타(연구개발<br>활동 등) |   |
|         | 특허출원건     | 특허등록건 | 특허등록비율 | 건수           | 기술료 | 제품화 | 매출액 | 수출액 | 고용창출 | 투자유치 |      | 논문     |      | 학술대회<br>수 |             |      | 정책건의        | 인재양성 |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| SCI    | 비SCI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단위      | 건         | 건     | 건      | 건            | 백만원 | 백만원 | 백만원 | 백만원 | 명    | 백만원  | 건    | 건      | 건    | 건         | 명           | 명    | 건           | 건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가중치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최종목표    | 6         | 3     | 5      | 4            | 6   | 4   | 9   | 3   | 6    | 9    | 2    | 24     | 6    |           | 5           | 4    | 6           | 4    | 9                |   |
| 1차년도    | 목표        | 3     | -      | 2            | 2   | 2   | 1   | 5   | -    | 2    | 5    | 1      | 5    | 3         |             | 2    | 2           | 2    | 1                | 5 |
|         | 실적        | 2     | -      | 2            | 2   | 2   | 1   | 4   | -    | 2    | 5    | 2      | 6    | 2         |             | 2    | 2           | 1    | -                | 3 |
| 2차년도    | 목표        | 2     | -      | 1            | 1   | 2   | 1   | 3   | -    | 1    | 2    | 1      | 15   | 2         |             | 1    | 1           | 2    | 1                | 3 |
|         | 실적        | 1     | -      | 1            | 1   | 1   | 1   | 4   | -    | 2    | 2    | 2      | 10   | 1         |             | 1    | 1           | 2    | 1                | 1 |
| 소 계     | 목표        | 5     | -      | 3            | 3   | 4   | 2   | 8   | -    | 3    | 7    | 2      | 20   | 5         |             | 3    | 3           | 4    | 2                | 8 |
|         | 실적        | 3     | -      | 3            | 3   | 3   | 2   | 8   | -    | 4    | 7    | 4      | 16   | 3         |             | 3    | 3           | 3    | 1                | 4 |
| 종료 1차년도 | 1         | 2     | 1      | -            | 1   | 1   | -   | 1   | 1    | 2    | -    | 1      | 1    |           | 1           | -    | 1           | 1    | -                |   |
| 종료 2차년도 | -         | 1     | 1      | -            | -   | -   | -   | 1   | 1    | -    | -    | -      | -    |           | 1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       |   |
| 종료 3차년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 | 1            | 1   | 1   | 1   | 1   | 1    | -    | -    | 3      | -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1    | 1           | 1    | 1                |   |
| 종료 4차년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      | -   | -   | -   | -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  | -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       |   |
| 종료 5차년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      | -   | -   | -   | -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  | -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       |   |
| 소 계     | 1         | 3     | 2      | 1            | 2   | 2   | 1   | 3   | 3    | 2    | -    | 4      | 1    |           | 2           | 1    | 2           | 2    | 1                |   |
| 합 계     | 6         | 3     | 5      | 4            | 6   | 4   | 9   | 3   | 6    | 9    | 2    | 24     | 6    |           | 5           | 4    | 6           | 4    | 9                |   |

- ① 진도관리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연 1회 연구중반기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관련 서식(주관연구기관 진도점검 자체조사표)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농기평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- ② 농기평에서는 연구의 진도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해 연구수행 중이거나, 연구 완료 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.
- ③ 농기평은 진도점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.
- ④ 진도점검 자체조사표 작성 방법
  - ✓ 해당과제의 과제 기본 정보 및 연구개발비를 작성합니다.
  - ✓ 당해연도 연구 시작부터 진도점검 개최 시점까지 연구를 수행한 추진 실적을 세부 과제별로 주요연구 내용을 작성하고, 연구계획대비 진도표에 진도율을 표기하여 과제진행도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.
  - ✓ 연구진행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진도점검 작성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작성합니다.
  - ✓ 연구관리 규정 및 제도개선, 애로사항, 성과에 대한 홍보 요청 등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.

- ① 중간평가는 당해연도 연구종료 2개월 이전까지의 연구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진도평가 개념이며, 중간평가는 중간서면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에 같음하여 실시하는 중간발표평가로 나눕니다.(초년도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는 중간평가 미실시)
- ② 중간서면평가는 인터넷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, 평균점수는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합니다.
  - ✓ 계속 :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
  - ✓ 조기완료 :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,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,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
  - ✓ 미흡 :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
  - ✓ 매우미흡 :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
  - ✓ 상대중단 : 평가결과 “계속”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라도 평가대상군에서 하위 15% 및 70점 미만에 해당되는 과제
    - ※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단대상과제에서 제외되고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한다.(중점관리과제는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인건비의 5%로 제한)
- ③ 중간발표평가는 조기완료과제, 중단(미흡, 매우미흡)과제, 상대중단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는 대면평가입니다.
  - ✓ 중간서면평가와 동일하게 분류하며,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비율이 70%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합니다. 이때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과제 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70%를 초과하더라도 계속과제로 분류합니다.
  - \* 예시) 중간평가 대상과제가 5과제인 경우
    - 5과제 × 0.7 = 3.5과제로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을 하면 3과제가 계속과제이며, 2과제는 중단과제로 분류됩니다.

- ① 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질의응답과 성과물 전시 등을 통해 연구과제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대면평가입니다.
- ② 최종평가를 통한 과제 분류는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.
  - ✓ 매우우수 :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,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
  - ✓ 우수 :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,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
  - ✓ 보통 : 당초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고,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
  - ✓ 불량 :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,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
  - ✓ 매우불량 :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,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
- ③ “매우우수”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(3점)이 부여되며, “불량” 및 “매우불량”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조치 및 정밀정산 등의 후속조치가 있습니다.
- ④ 최종평가에서 “불량” 또는 “매우불량”으로 평가되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거친 후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1회에 한 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. 최종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
- ① 평가점수는 평가 종류별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통해 반영비율을 달리하여 산정합니다.
- ② 평가 종류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평가종류 | 정량적평가* 점수 | 정성적평가 점수 | 종합점수 | 비고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선정평가 | 0         | 100      | 100  | 정량적 평가 없음   |
| 중간평가 | 20        | 80       | 100  | 서면·발표 평가 동일 |
| 최종평가 | 40        | 60       | 100  | -           |

\* 정량적평가는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이며 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률에 따라 점수가 산출됨

- ③ 정량적 평가 점수 산정표(예시)

| 성과지표      |      | 계획<br>(A) | 달성<br>(B) | 유효성 | 목표달성률<br>(C:B/A) | 지표달성률<br>(C' ≒ C) | 가중치<br>(D) | 점수(E)<br>(E:C' × D)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화       | 제품화  | 5         | 10        | ○   | 20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0.40       | 40.0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기술창업 | 0         | 0         | X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매출창출 | 0         | 0         | X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고용창출 | 0         | 0         | X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투자유치 | 0         | 0         | X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소계   | 5         | 10        | ○   | 20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지식재산권(출원) |      | 2         | 4         | ○   | 20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0.10       | 10.00               |
| 지식재산권(등록) |      | 1         | 0         | ○   | 0.0%             | 0.0%              | -          | 0.00                |
| 논문(SCI)   |      | 1         | 1         | ○   | 10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-          | 0.00                |
| 논문(비SCI)  |      | 2         | 1         | ○   | 50.0%            | 50.0%             | -          | 0.00                |
| 학술발표      |      | 3         | 9         | ○   | 30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0.05       | 5.00                |
| 기술이전      |      | 2         | 2         | ○   | 10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0.10       | 10.00               |
| 교육지도      |      | 10        | 15        | ○   | 15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0.05       | 5.00                |
| 기술인증      |      | 1         | 1         | ○   | 10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0.10       | 10.00               |
| 인력양성      |      | 0         | 1         | X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
| 정책활용      |      | 1         | 0         | ○   | 0.0%             | 0.0%              | 0.10       | 0.00                |
| 홍보전시      |      | 5         | 31        | ○   | 620.0%           | 100.0%            | 0.10       | 10.00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|      | 0         | 0         | X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|      | 33        | 75        | 11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90.00점              |

- ① 최종보고서 초안은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(FRIS시스템에 업로드)하여야 하며, 제출한 최종보고서 초안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.
  - ✓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최종평가 시 공개유보(비공개)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② 최종보고서는 완료된 연구내용과 결과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.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✓ 연구개발과제의 목적,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작성합니다.
  - ✓ 연구개발 수행 내용을 이론적, 실험적 접근방법, 연구내용, 연구결과로 구분하여 기술합니다.
  - ✓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예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.
  - ✓ 연구개발의 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을 작성합니다.
  - ✓ 도입·개발한 연구시설·장비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 등록번호를 기술합니다.
- ③ 최종평가 후 평가 의견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수정·보완하고, 보완된 최종보고서의 배포 결과 및 관련 서류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기평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- ✓ 배포용 최종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,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


### ③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

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은 과제 기획에서부터 연구수행 및 종료 후 5년까지 전 주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진행합니다.

- ✓ 과제기획 : 사업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, 목표를 설정하여 과제를 기획합니다.
- ✓ 선정평가 : 과제별 연차 성과목표치, 연구종료 후 성과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합니다.
- ✓ 중간평가 : 과제별 연차 성과목표치 기준으로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합니다.
- ✓ 최종평가 : 과제별 연구종료 시점에 성과 목표대비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, 향후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합니다.

※ 중간, 최종평가에서 정량적 평가가 반영되며, 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률에 따라 점수가 산출됩니다.

✓ 연구완료 후

-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: 연구진행 및 완료 후 5년간 매년 성과목표에 따라 발생한 성과(지식재산권, 논문, 사업화, 생명자원 등)를 관리하고, 점검하기 위해 연구자로 하여금 매년 활용한 성과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도록 합니다.(온라인 등록)

※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제출하여야 할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.(적용기간 : 1년, 적용점수 : 1점)

- 추적평가 :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고, 우수실적을 창출한 연구자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간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.

## ① 논문

- ✓ 국·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의미하며, 논문 게재 시 반드시 사사(謝辭)를 표기해야 하며, 주·공저자 모두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이어야 합니다.

※ 사사표기 방법(홈페이지 > R&D사업마당 > 관련규정 및 서식)에서 확인 가능

## ②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품종보호 등)

- ✓ 연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특허, 실용신안권, 디자인, 상표 출원과 품종보호 출원 등을 의미하며,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 시 반드시 지원한 사업의 정보(사사)를 기재해야 합니다.

※ [성과관리⑨] 사사표기 방법 참고

## ③ 기술실시

- ✓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실시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기술사용에 대한 계약 및 기술료 징수성과를 의미하며, 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농기평에 정부 납부기술료를 납부하고, 기술실시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.

## ④ 사업화

- ✓ 기술실시계약 후, 실시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, 기존공정을 개선하거나, 시제품·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일련의 영리활동을 의미합니다.

※ 사업화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“사업화실적확인서”를 제출하여야 함

## ⑤ 그 외 성과

- ✓ 수출실적 : 수출실적증명서, 수출관련 인증(예, GLOBAL GAP) 등
- ✓ 농기계 및 농자재 인증 : 농기계, 농자재와 관련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실적
- ✓ 교육·지도활용 : 연구관련 교육, 연구교재, 기술지도 컨설팅, 영농·영림 등의 현장활용 실적
- ✓ 인력양성 : 해당 과제를 통해 박사, 석사, 학사 등을 양성한 실적

## ① 연구성과 검증

- ✓ 논문, 특허, 사업화 등의 성과에 대해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상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도록 하고, 농기평에서는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과제의 성과물로 인정하게 됩니다.

※ 연구성과 검증 후, 과기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출 성과로 제출하여 사업평가 진행

## ② 논문 및 특허

- ✓ 논문 : 성과로 제출된 논문을 WOS(Web of Science) 및 NDSL검색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성과로 인정합니다.

※ 반드시, 논문 및 저널제목, ISSN, 발행연도, 볼륨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시작페이지를 스캔하여 첨부

- ✓ 특허 : 특허청([www.kipris.or.kr](http://www.kipris.or.kr))에서 검색된 자료에 대해서 성과로 인정되며, 품종의 경우는 국립종자원([www.seed.go.kr](http://www.seed.go.kr))에서 확인된 성과만 인정됩니다.

## ③ 기타 성과

- ✓ 기술실시 : 농기평에 기술료 감면승인(주관기관, 영리법인)신청, 혹은 실시계약체결 보고(주관기관, 비영리법인)를 완료한 실적을 의미합니다.
- ✓ 사업화 : 기술실시 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며, 증빙자료(사업화실적확인서)를 첨부하여야 성과로 인정됩니다.
- ✓ 수출실적 : 수출실적증명서, 수출관련 인증(예, GLOBAL GAP)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.
- ✓ 농기계 및 농자재 인증 : 농기계, 농자재와 관련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실적을 말합니다.

## ④ 기여율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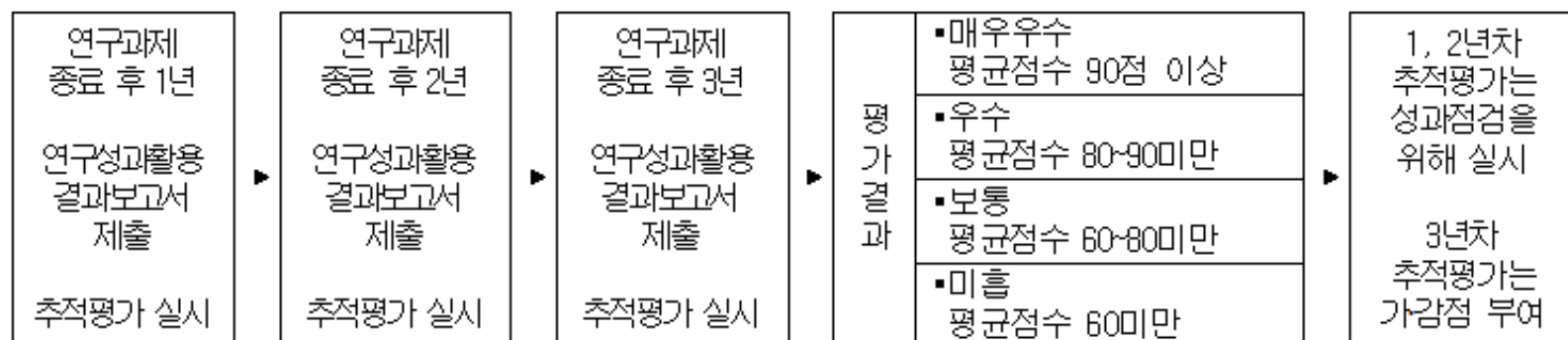
- ✓ SCI 논문과 특허를 대상으로 동일한 성과가 여러 개 입력되었을 경우, 기여율 조정을 통해 성과에 반영합니다.

| 성과   | 과제                  | 성과기여율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특허 A | 과제 1(○○○사업:세부프로젝트1) | 60%   |
|      | 과제 1(○○○사업:세부프로젝트1) | 40%   |

## ① 추적평가 소개

- ✓ 농기평에서는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간 매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합니다.
- ✓ 연구과제 종료 후 입력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추적평가가 진행되며, 연구과제의 조사·분석·평가 자료 제출 및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는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충실하게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.

### <추적평가 절차 및 결과>





## 4 연구성과 확산

## ①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

✓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, 국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(산업체)를 발굴·포상하고 있습니다.

※ '98년 「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」으로 출범,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「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(08~12년)」 및 「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(13~)」으로 명칭 변경

✓ 포상은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으로 구분되며, 현장적용 및 학술연구 기술분야로 구분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.

※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3점 가점 부여

✓ 추천방법은 농축산업인 등 일반인 추천이 가능하며, 추천대상자가 기관·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속기관·협회·단체의 장이 추천하고 소속기관이 없거나 소속기관의 대표자를 추천할 경우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

※ 매년 4~7월 경 농기평 홈페이지([www.ipet.re.kr](http://www.ipet.re.kr))를 통해 공고를 진행합니다.

##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 연구성과 100선

✓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의 우수성과 창출 견인과 홍보 및 과학기술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·선정하고 있습니다.

✓ 이와 관련하여 농기평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기초-응용-개발의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성과창출 사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.

※ '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'에 선정된 연구자는 선정일 기준으로 2년간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3점 가점 부여

## ① 과학기술대전

- ✓ 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활용한 고부가 생명산업을 전시·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농식품 R&D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.

※ 주최(주관) : 농림축산식품부(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)

### ✓ 주요내용

- 테마별(농업, 산림, 종자, 검역, 식품 등) 전시관, 생명산업 관련 전시·체험
- 종자검정세미나, G&LT 포럼, 기술이전 설명회 등 생명산업 관련 학술행사 진행

## ② 성과보고회 및 기술발표회

- ✓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한 연구성과 가치 확산과 국민들의 농식품 R&D 성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성과보고회 및 기술 발표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.
- ✓ 농기평 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발표회 행사를 추진합니다.
- ✓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별 현장 애로기술 중심의 기술설명회 형태로 행사를 추진합니다.

## ① 연구성과 및 홍보계획 수요 조사 실시

- ✓ 농기평에서는 매 월 상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홍보계획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.

## ② 보도자료 작성 및 추진

- ✓ 농기평에서는 중간·최종평가, 추적평가 및 현장컨설팅 등의 과정을 통해 우수한 과제들을 발굴합니다.
- ✓ 발굴된 성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또한,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성과 내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합니다.

## ③ 대표성과 사례집 발간

- ✓ 매년 농림축산식품 R&D의 사업별 성과분석, 연구성과 기술가치평가, 기술이전기업 사업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R&D 사업별 우수성과를 발굴합니다.
- ✓ 발굴된 연구성과 중 정량적, 정성적 성과가 모두 우수한 과제에 대해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농기평 우수성과로 선정하고 '농식품 R&D 사업 대표성과 사례집'으로 발간하여 대·내외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
## 5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

□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이란?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

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-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
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

※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행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

□ 신기술인증 혜택

- 농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청 시 NET 인증기업 가점 부여
-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(3쪽 참조) 신청 시 ‘우수기술확인’ 평가 단계 면제(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확인평가로 바로 진행)
- 조달청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지원

## □ 녹색인증이란?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

- 사회·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
- 온실가스 감축기술,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, 청정생산기술, 청정 에너지 기술,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

## □ 녹색인증 혜택

- (용자지원) 산업별 보급 용자 참여 우대, 중소기업정책자금 용자 우선지원, 기술보증 중점 지원, 수출금융 지원 우대 등
- (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) 정부발주 공사 우대, 공공구매·국방조달 심사 우대, 중소기업벤처부 우수제품 지정 신청, 광고료 지원,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 등
- (사업화 기반 조성)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,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, 해외기술인력도입사업 참여우대 등
- (지자체 및 기타 컨설팅 지원) 경기, 경남, 부산테크노파크 등

❑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란? 우수기술로 확정된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규모를 산정하여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

❑ 지원금액 :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

\* NH 농협은행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농신보 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, 최종 대출액 결정은 농협은행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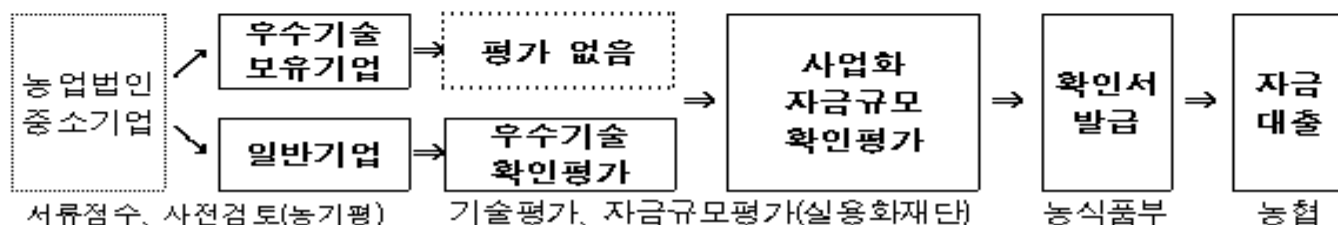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조건 : 고정금리 2.5%, 변동금리 1.15%('18.3월 기준으로 변동가능)

○ 융자기간 :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❑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

○ (신청방법) 농협은행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→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홈페이지([www.newat.or.kr](http://www.newat.or.kr))를 통해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→ 평가결과에 따른 확인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을 통한 대출 진행

○ 진행절차



## 사업목적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, 영세 창업·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

## 예 산

- '19년 총 42억 원 이내 지원 (신규 : 28.8억 원, 계속 : 13.6억 원 이내)

| 내역사업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| 국가 R&D로 확보된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(특허 및 시제품 등)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화 단계의 지원 |
| 벤처창업바우처지원    |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농식품 창업·벤처기업의 R&D 지원을 통한 성장 견인  |



- ☐ 장비기자재가 필요하십니까?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볼까요? '상부상조플랫폼'을 소개합니다.
- ☐ (정의) 농산업체·벤처기업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관련기관 공동활용(장비기자재·시험포장·시설)장비정보 서비스
- ☐ 신청절차(상부상조플랫폼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, [www.fris.go.kr](http://www.fris.go.kr))

| 절차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부상조플랫폼-이용신청 클릭   | 장비기자재, 시설 검색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회결과 세부내용 확인      | 검색 결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클릭하여 세부내용 확인 |
|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비활용 상태 확인        | 이메일, 전화로 장비 보유기관 연락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유기관 규정에 따라 활용 요청 | 신청서 작성·제출(필요 시 추가 요구자료 제출)   |
|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비 사용             | 장비 보유기관 방문 및 해당 장비 사용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료 사용료 납부         | 장비 보유기관 규정에 따라 사용료 지급        |

- ❑ 기술은 자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유망기술 발표회를 소개합니다.
- ❑ (정의) 농식품 R&D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 등의 형태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
  - 보유기술에 대한 홍보자료(SMK)를 작성하여 홍보 추진(기술거래전문 기관 보유DB 50만건, 농기평 회원 5만명 기술홍보)
  - \* 기술홍보자료(SMK : Sales Material Kit) : 기술의 우수성, 경제성 등 사업성에 대한 내용 위주로 기술거래 대상자를 위해 작성한 기술소개자료

**기술개요**  
본 기술은 ... (기술 설명)

**기술장점**  
1. ...  
2. ...  
3. ...

**기술영향분야**  
본 기술은 ... (영향 분야 설명)

**계명연령**  
본 기술은 ... (연령대 설명)



**농기평, 농식품 산업 이끌어 나갈 R&D 기술 선봬**  
2018-12-24 12:27:01

2018년 농식품 R&D 유망기술 발표회 개최

농식품기술혁신사업(농식품 R&D 유망기술 발표회)을 주관하는 2018년 농식품 R&D 유망기술 발표회에서 농식품 분야 기술사업과 유망기술 발표 및 기술거래에 대한 상담회가 진행됐다.

농식품기술혁신사업(농식품 R&D 유망기술 발표회)을 주관하는 2018년 농식품 R&D 유망기술 발표회에서 농식품 분야 기술사업과 유망기술 발표 및 기술거래에 대한 상담회가 진행됐다.

# 감사합니다.

